
찾아가는 공공갈등관리 역량강화 교육

- 일 시 : 2016. 12. 07[수]
- 시 간 : 10:00 ~ 12:00
- 장 소 : 서산시 버드랜드

찾아가는 공공갈등관리 역량강화 교육

① 목적

- 충청남도 및 시·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공공갈등관리 역량강화 교육 기회 부여
- 지역의 갈등 유형·상황의 문제를 상정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모델 적용을 통한 현안문제 해결의 능력 향상 및 지식공유

② 내용

- 갈등 조정 전문가 특강(충청남도 갈등유형 분석)
- 지역 현안 중심의 토론 진행
-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

③ 행사개요

- 일 시 : 2016. 12. 7.(월), 10:30 ~ 12:40
- 장 소 : 서산 버드랜드 세미나실
- 참 석 : 약 50명(서산시·보령시 지역주민 등)
- 주최·주관 : 충남연구원, 서천·보령 지속가능발전협의회

④ 행사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0:30~11:00	◦ 교육 준비 및 접수	
11:00~11:40	◦ 지속가능 발전과 지방정부의 역할	최 병 조 (한국교육환경네트워크)
11:40~12:20	◦ 갈등관리교육 - 충청남도 공공갈등 관리와 사례	신 기 원 (신성대학교 교수)
12:20~12:40	◦ 질의응답 및 토론	
12:40	◦ 폐 회	



목 차



I. 지속가능 발전과 지방정부의 역할 1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최병조 사무처장

I. 충청남도 공공갈등 관리와 사례 53

신성대학교 신기원 교수

부록 -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69

지속가능 발전과 지방정부

-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최병조

지속가능 발전과 지방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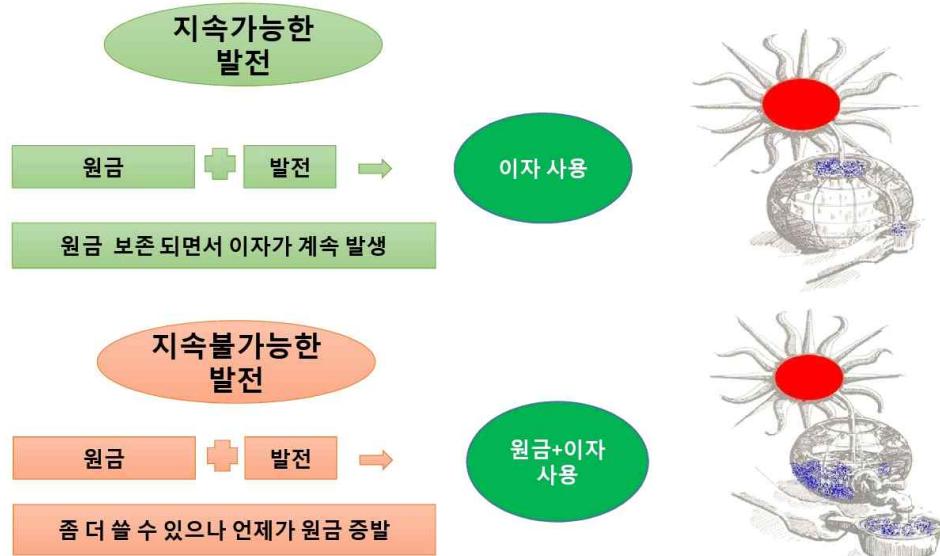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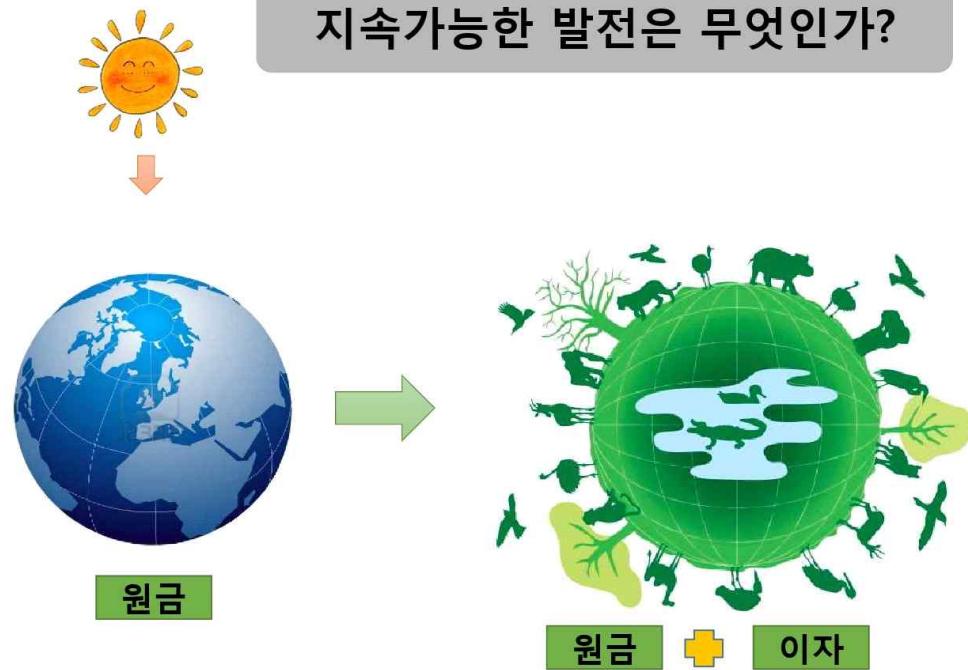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역할

2016. 12

충청남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속가능한 발전은 무엇인가?





내 손자도
내가 누리
고 있는
것을 누리
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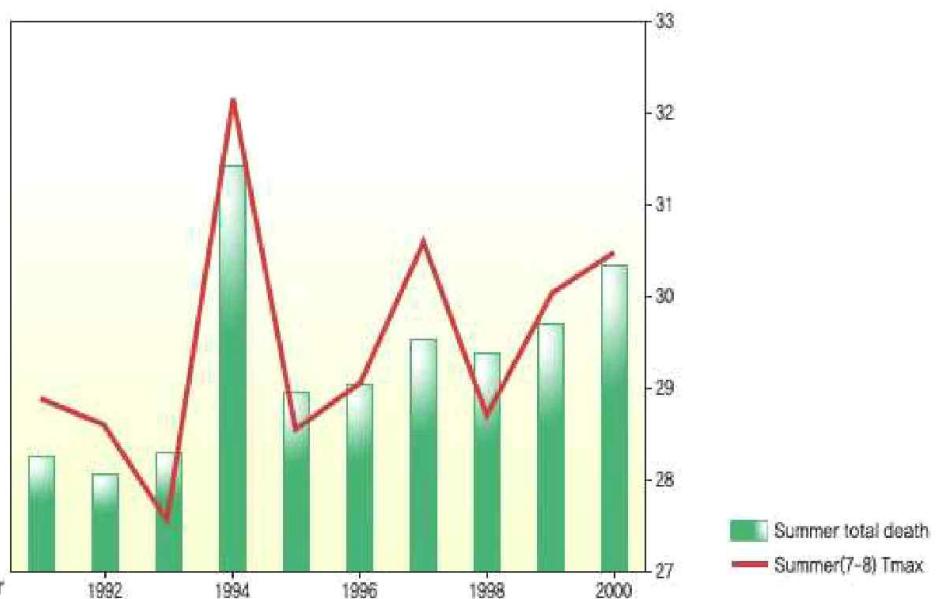




황장목이 되려면 350년



'91~'00년간 서울지역 7-8월 평균 일최고기온과 사망자수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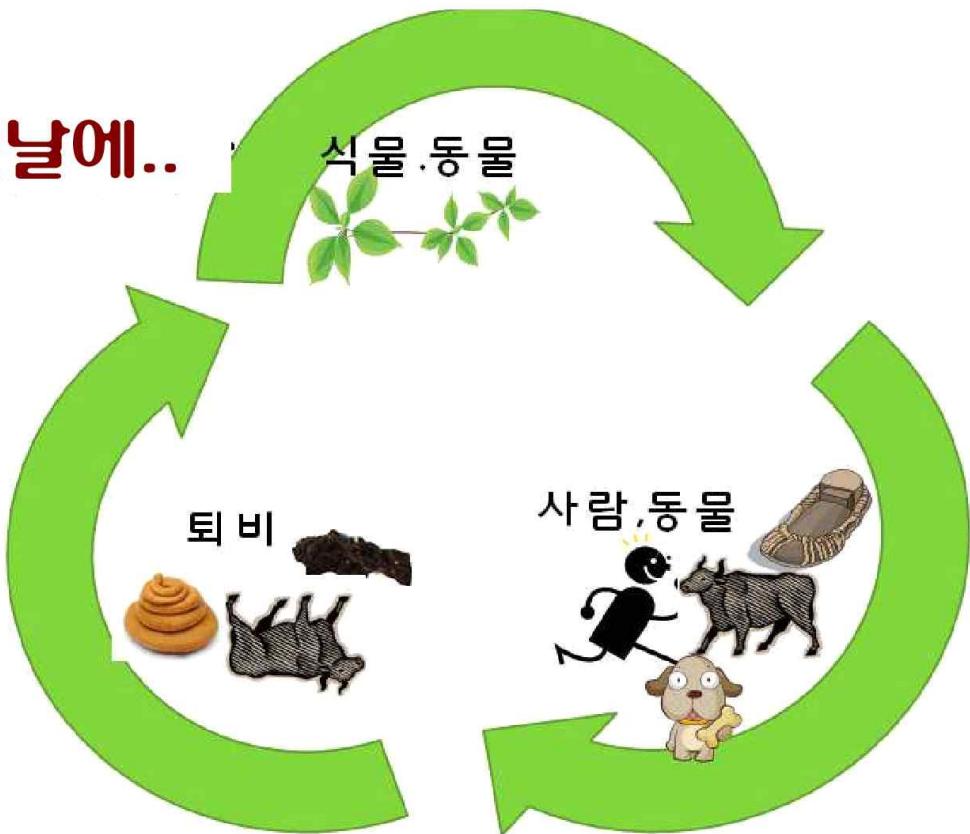


10년간 7-8월 사망자수와 7-8월 평균 최고기온과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음($r=0.896$)





옛날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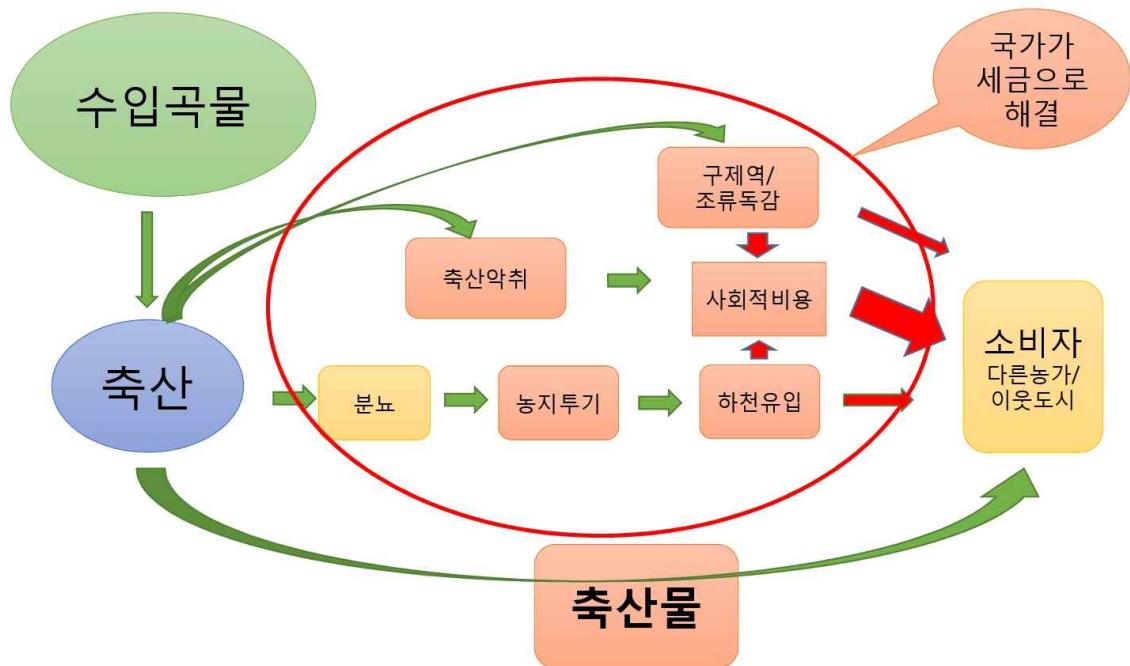


지금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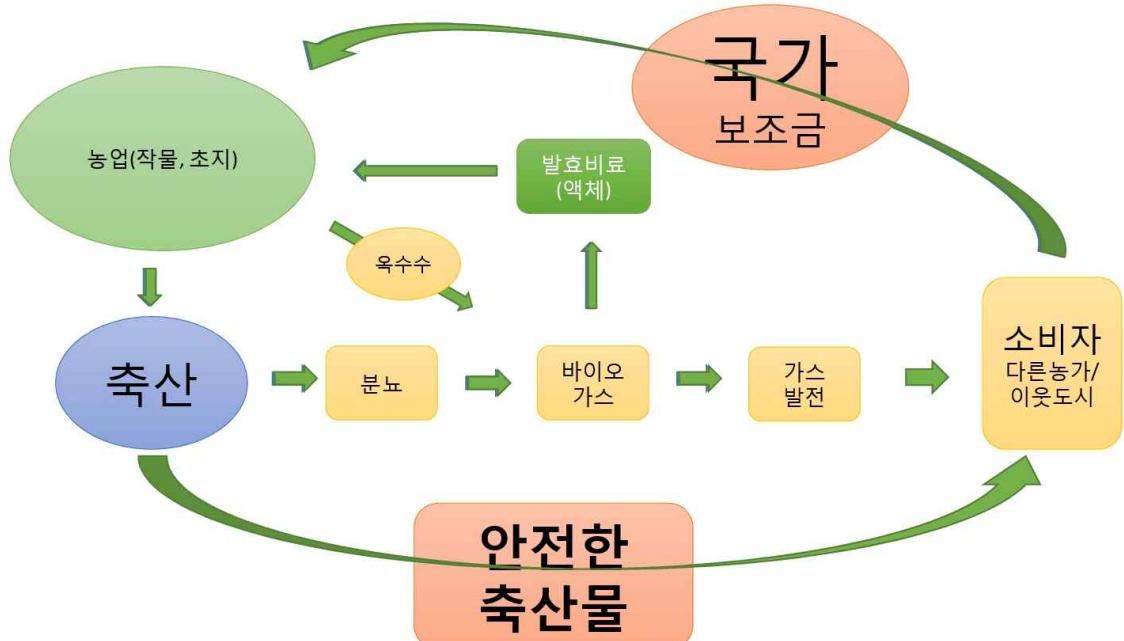
- 인구증가
- 과소비
- 석유, 화학쓰레기



축산에서 본 지속 가능한 발전



축산에서 본 지속 가능한 발전



축산에서 본 지속 가능한 발전



축산에서 본 지속 가능한 발전

축산 분뇨의 처리와 순환

태우면

열

퇴비화

열

퇴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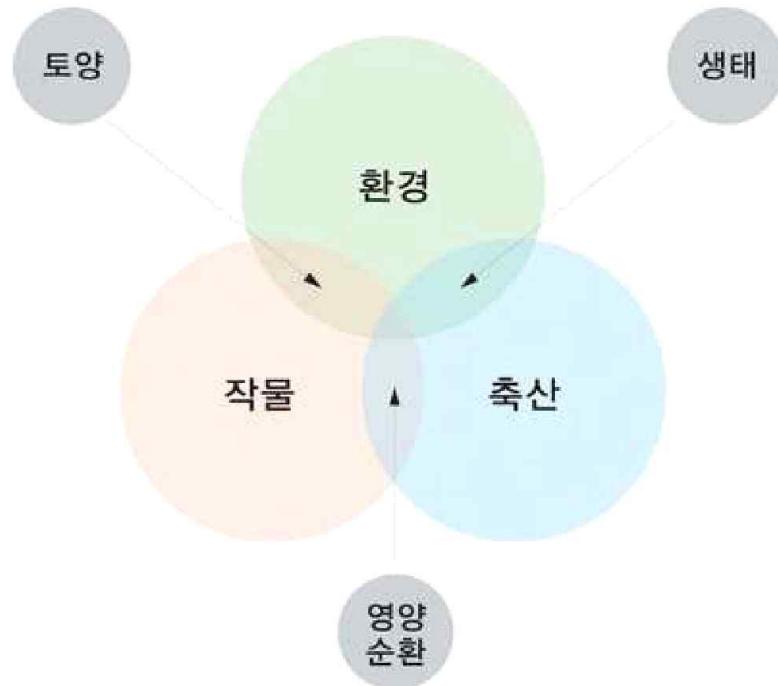
바이오 가스

열

퇴비

가스 + 전기

축산에서 본 지속 가능한 발전



축산으로 본 지속 가능한 발전



축산으로 본 지속 가능한 발전



축산에서 본 지속 가능한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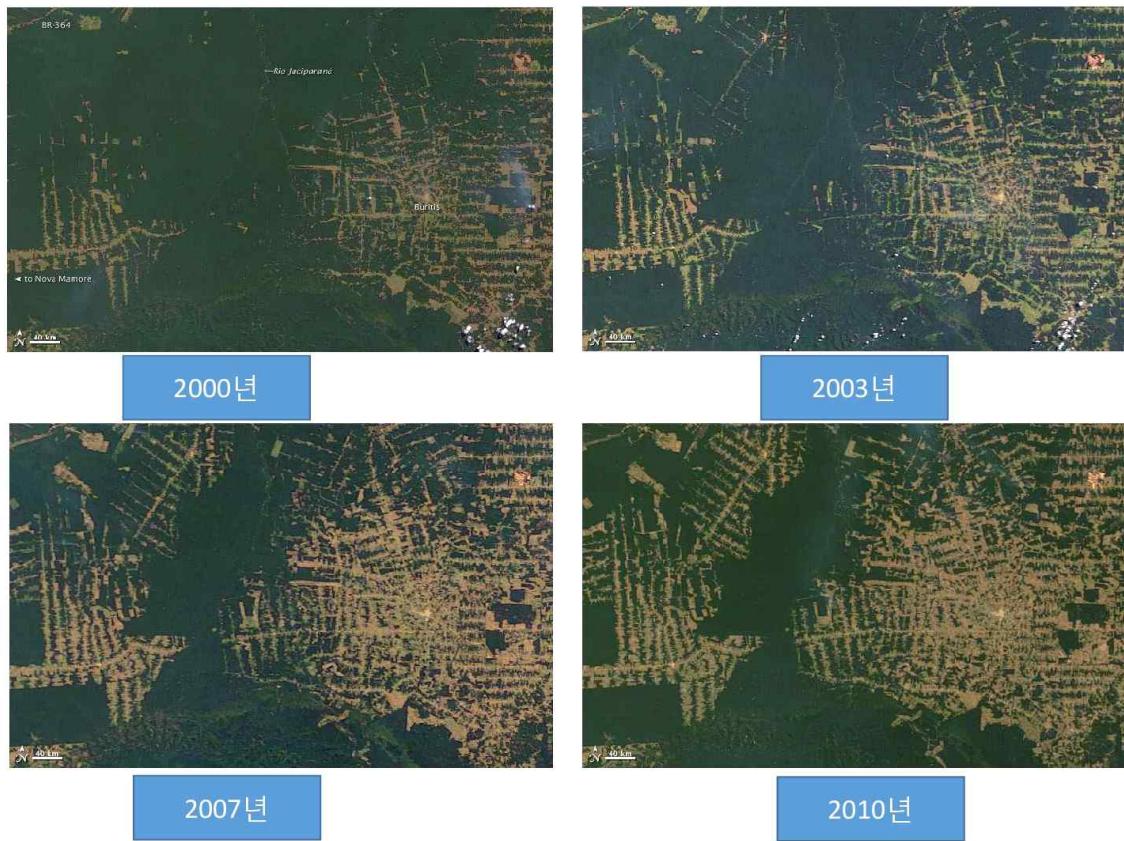


축산에서 본 지속 가능한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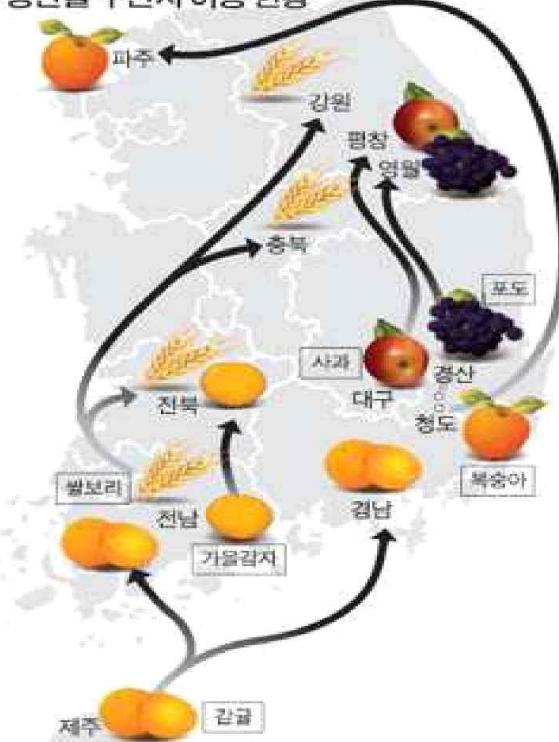


토지이용의 변화





농산물 주산지 이동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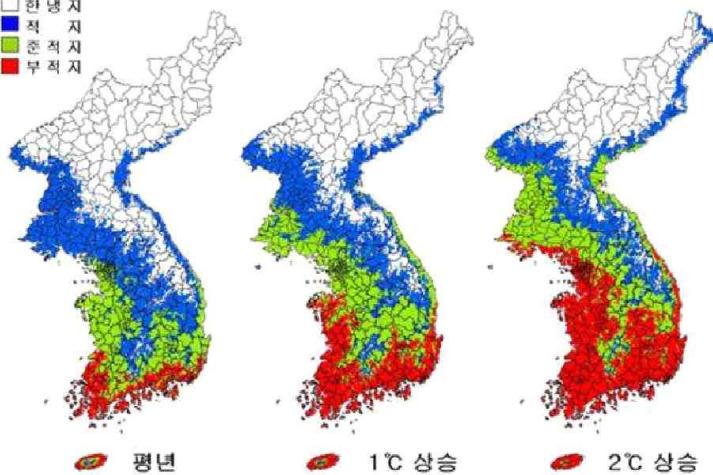
우리나라의 영향

2050년 온난화 영향 예상

온난화 영향 예상

사과 재배 지역의 북상

- 한랭지
- 적지
- 준적지
- 무적지



집중호우 및 태풍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막대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가 초래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 유엔 산하기구인 정부간기후변화협의체(IPCC)
- 1988년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프로그램(UNEP)에서 공동 설립
-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 영향 및 적응, 완화 등 객관적인 평가보고서 작성
- 유엔 및 기후변화협약에 보고하는 것이 중요 임무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유엔기후변화협약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 협약.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의 방출을 제한하여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고자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세계 192개국이 체결한 국제 협약으로 리우 환경 협약

UNFCCC COP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 유엔 기후 변화 협약(UNFCCC)에 가입한 당사국들이 모여서 개최하는 회의
- UNFCCC에 가입한 당사국들이 모여서 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
- 제1차 당사국 총회는 1995년 독일 베를린에서 열렸고,
-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온실가스의 구체적 감축 목표를 설정한 교토 의정서(Kyoto Protocol)가 채택

교토의정서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온실가스의 구체적 감축 목표를 설정

- 선진 38개국(우리나라 제외)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
- 2007년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13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2012년 이후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까지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해야 한다는 '발리 로드맵'이 채택
- 2009년 말까지 2012년 이후의 이른바 '포스트 교토 체제'를 위한 세계 각국 간 협정을 완료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선진국은 물론 우리나라를 포함한 개발도상국까지 2013년부터 온실가스 의무 감축에 참여해야 함

기후변화

지구 온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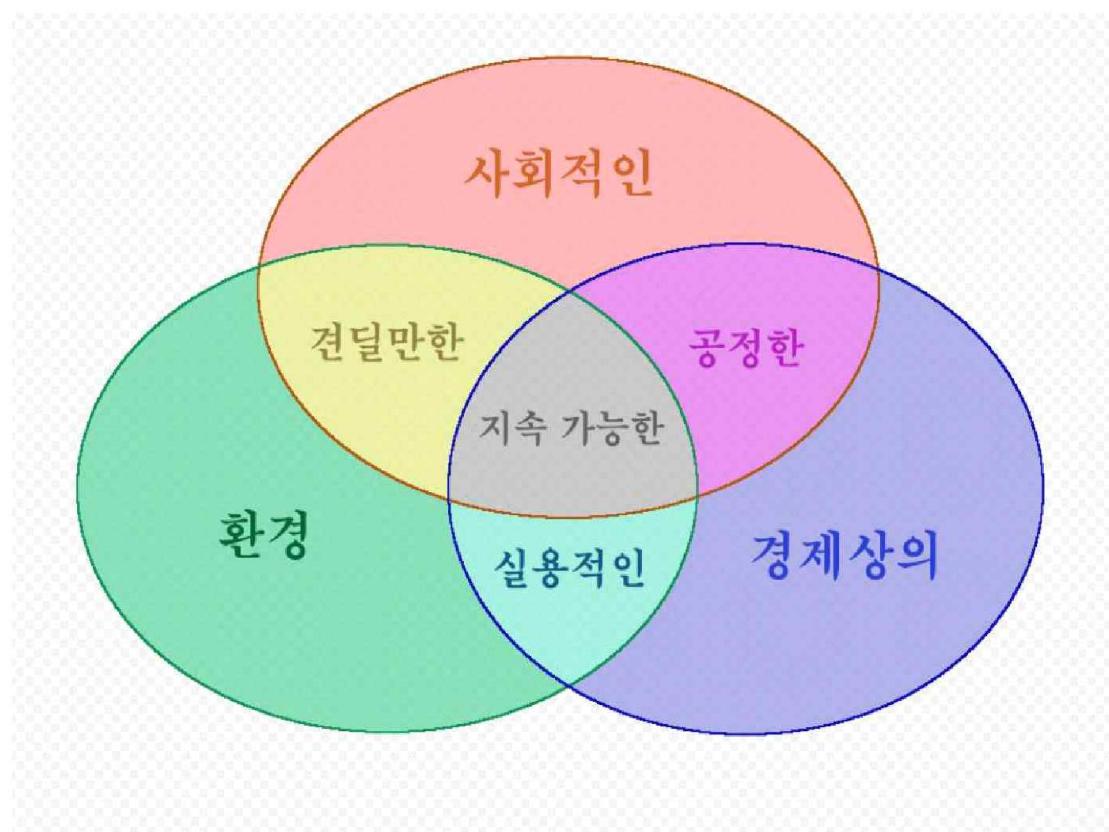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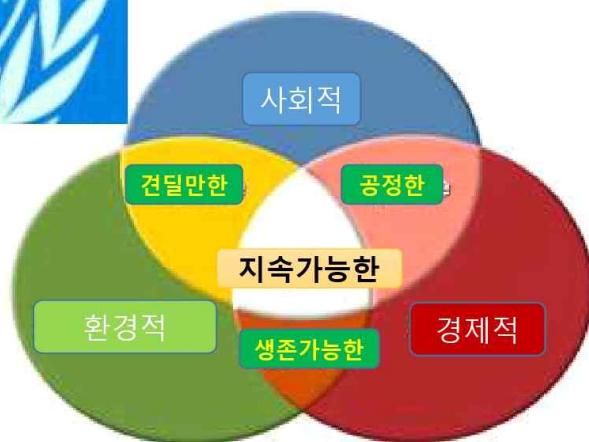
1일 평균 온도

0,3,6,9, 12, 15,18,21 ÷ 8

적산온도

1 일의 평균 기온×날짜수

감자는 1,000도
보리는 1,600도
벼는 2,500도
토마토는 1000도의 적산 온도에 달했을 때 첫 번째 꽃이 핀다



우리 공동의 미래(1987)

미래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잠재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

정책결정에 시민들의 참여 보장 – **정치체제**

유연하고 자기교정 능력을 갖고 있는 **행정체제**

자립적, 지속적인 기반 위에서 잉여생산물과 기술적 지식 생산 – **경제체제**

불균형으로 인한 긴장 해결 – **사회체제**

발전을 위한 생태적 토대를 보존 의무 존중 – **생산체제**

끊임없이 새로운 해결책 찾기 – **기술체제**

지속가능한 유형의 무역과 재정흐름 촉진- **국제체제**

브룬트란트 보고서의 의의

- 필수적인 필요(needs)의 개념 + 환경용량의 한계
- 환경정책과 개발전략의 통합을 위한 틀을 제공
- 양립 가능성 확인보다는 달성 여부에 대한 관심으로
- 고통스런 선택과 정치적 의지

‘브룬트란트 공식’의 논란

- 애매함과 일관성의 부재
- 구체적으로 합의된 개념인가?
- 측정 가능한 기준의 필요성
- 그 자체를 목표로 보기보다는 창조적인 사고와 실천의 촉매 역할
- 특정한 경로라기보다는 권한부여(empowerment)의 개념

지방 의제21

지구적, 국가적 차원에서 논의된 지속가능발전 실천 노력은 지역 차원에서 함께 실천되었을 때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지역 차원의 실천은 정부, 기업,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토론하는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환경보전과 지속 가능한 사회와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해야 한다.

지방 의제21의 개요

리우 선언의 「의제21(Agenda 21)」은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하였고, 세부실천계획으로 각국 지방자치단체가 지속 가능한 지역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행동계획을 담은 「지방 의제21(Local Agenda 21)」을 지역주민과 합의하여 1996년까지 설치할 것을 권고하였다. 우리나라에는 1995년 처음으로 「지방 의제21」을 추진하기 시작하였고,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지방 의제21」 실천 계획과 조직이 등장하였다. 그림 의제21의 수립 체계 「지방 의제21」은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시민운동이고 시민과 기업, 행정, 학계가 함께 만드는 새로운 환경보전 계획이며, 새로운 형식의 환경보고서라는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의제 21의 수립체계



의제21의 수립체계

지방의제21의 성격

- 첫째, 「지방의제21」은 시민이 주도하는 지역차원에서의 환경보전운동이다. 따라서 「지방의제21」은 수립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주요 단체가 광범위하게 참여하여 토론과 합의라는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 둘째, 「지방의제21」은 지역사회의 “환경 및 개발계획”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최소한 지역사회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행동규범을 기술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은 되어야 한다.**
- 셋째, 「지방의제21」은 비전과 지침을 담은 보고서로서의 성격도 지닌다. 즉, 지역사회에서의 토론과 합의내용이 보고서로서 작성되어 해당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비전과 행동지침이 알기 쉽게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 넷째, 「지방의제21」의 실천 주체는 주민 모두이다.
- 다섯째, 「지방의제21」은 기존의 “지역환경 관리계획”과는 성격이 다르다. “지역환경 관리계획”은 관이 중심이 되어 작성한 당해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한 중장기 집행 및 투자 계획인 반면에, 「지방의제21」은 관과 시민이 협동하여 작성된 당해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시민 스스로가 실천해 가는 **실천계획**이다.

지방의제21의 추진 절차



지방의제21의 추진 절차

- 첫째, 누가 참여하며, 어떠한 형태로 작성할 것이며, 필요한 경비는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지방의제21」수립을 위한 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추진회의 구성, 포럼 설치, 원탁회 구성, 실무그룹과 자문그룹 구성, 거버넌스 구축 등 **다수의 주요 관련 집단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둘째, 환경비전과 지역 환경실태를 검토하여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의 우선순위를 검토한다.
- 셋째, 문제의 우선순위에 따라 장기, 단기 환경개선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 계획, 경제적 유인책, 교육 및 홍보를 포함한 프로그램을 구상한다.
- 넷째, 분과위원회와 추진협의회를 거쳐 구체적인 목표와 우선순위, 추진일정, 실행주체, 책임분담, 재정 및 기술적 타당성, 평가항목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행동계획과 실천계획을 수립**한다.
- 다섯째, 실천계획을 집행하고 모니터링을 통하여 실천내용을 감시한다.
- 마지막으로, 계획의 집행 결과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목표의 달성을 정도와 성과를 평가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여 계획을 수정 보완한다.

국가적 실천노력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는 각 국가의 실천 노력이 요구된다.
-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 80여 개국 이상이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국가전략, 계획, 정책 및 과정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시민사회와 기업 및 정부 간의 참여와 협력을 이루어내고, 국가적 의사결정과 정책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



COP [Conference of the Parties] 당사국 총회

CMP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Kyoto Protocol) 교토의정서에 대한 당사국 역할



ICLEI의 리우+20회의에 관한 평가

20년 전 리우 지구정상회담에 모인 각국과 정부 대표들이 채택한 의제21과 함께 ICLEI는 지방의제21의 선두에 섰고, 지속가능성을 향한 전진의 글로벌 성공스토리로 간주될 수도 있다. 반면, 국가 의제21을 집행해온 국가 성공스토리를 보여줄 수 있는 국가는 많지 않다. 마찬가지로 UN기후변화 협약에서 교토의정서라는 이행규칙으로 진입하는 데도 13년이 걸렸다. 반면, ICLEI가 첫 번째 도시 지도자 정상회담을 소집하고, 지방기후행동계획에 1,000여 지방자치단체들을 참여시킨 기후보호도시캠페인에 착수하기까지는 불과 8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



92 Global Forum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1992년 6월 유엔기후변화협약 채택
-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 각자의 능력에 따라 온실가스를 감축
- 선진국의 책임을 강조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구분	개최 시기	장소(국가명, 도시명)
제1차	1995. 3. 28 – 4. 7	독일 베를린
제2차	1996. 7. 8 – 7. 19	스위스 제네바
제3차	1997. 12. 1 – 12. 12	일본 교토
제4차	1998. 11. 2 – 11. 13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제5차	1999. 10. 25 – 11. 5	독일 본
제6차	2000. 11. 13 – 11. 25	네덜란드 해이그
제6차 속개	2001. 7. 16 – 7. 27	독일 본
제7차	2001. 10. 29 – 11. 10	모로코 마라케시
제8차	2002. 10. 23 – 11. 1	인도 뉴델리
제9차	2003. 12. 1 – 12. 12	이탈리아 밀라노
제10차	2004. 12. 6 – 12. 17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구분	개최 시기	장소(국가명, 도시명)
제11차	2005. 11. 28 – 12. 9	캐나다 몬트리올
제12차	2006. 11. 6 – 11. 17	캐나다 나이로비
제13차	2007. 12. 3 – 12. 14	인도네시아 발리
제14차	2008. 12. 1 – 12. 12	폴란드 포즈난
제15차	2009. 12. 7 – 12. 18	덴마크 코펜하겐
제16차	2010. 11. 29 – 12. 10	멕시코 칸쿤
제17차	2011. 11. 28 – 12. 9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
제18차	2012. 11. 26 – 12. 8	카타르 도하
제19차	2013. 11. 11 – 11. 22	폴란드 바르샤바
제20차	2014. 12. 1 – 12. 14	페루 리마
제21차	2015. 11. 30 – 12. 12	프랑스 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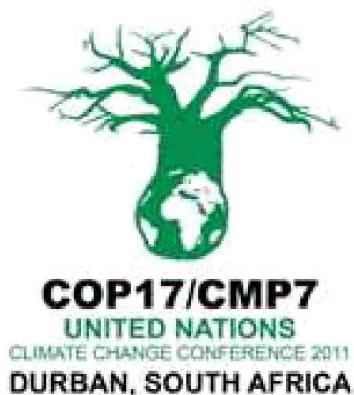
- 1997년 12월 교토의정서 채택
- 6가지 온실가스에 대한 정의
- 선진국에게 2008-2012년 동안 1990년 대비 평균 5.2% 감축 의무
- 2005년부터 발효



- 2009년 12월 코펜하겐합의
- 교토의정서에 불참한 선진국과 개도국이 참여하는 post-2012 목표
- 지구 평균 기온 상승온도를 2도로 제한하는 공동 목표 확인



- 2010년 멕시코 칸쿤합의
-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지원을 위한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설립 합의
- 선진국과 개도국이 2020년까지 자발적으로 온실
가스 감축을 합의



- 2011년 더반플랫폼
- 선진국의 교토의정서 연장 합의
- 2020년 이후부터 모든 당사국이 온실가스 감축
체계 참여 체제 합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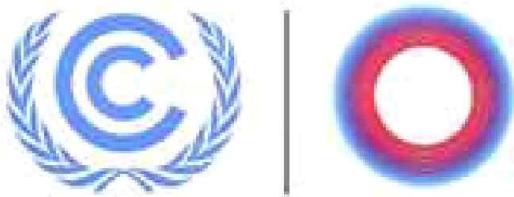
United Nations Climate Change Conference
COP18/CMP8 Doha, Qatar

- 2012년 도하게이트웨이
- 교토의정서 2차 공여기간을 2013-2020으로 설정하는 개정안 채택
- 미국, 러시아,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등 불참
- 참여국 전체 배출량은 세계 배출량의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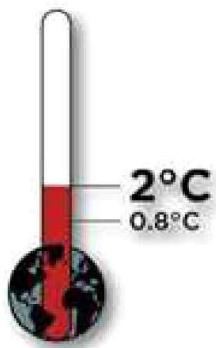
UNITED NATIONS
CLIMATE CHANGE CONFERENCE
COP19/CMP9
WARSAW 2013

- 2013년 바르샤바결과
- 지구 기온 상승을 2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필요한 2020년 이후 감축 공약을 자체적으로 2015년 이전에 제출하기로 합의



UN CLIMATE CHANGE CONFERENCE
LIMA COP 20 | CMP 10

- 2014년 리마선언
- 각국 기여공약(INDC) 제출 절차 및 일정 규정
- 기여공약에 반드시 포함할 정보 합의



- 2050년까지 세계 온실가스량을 40-70% 감축하고, 21세기 말까지 탄소 중립화를 이행해야

교토의정서에 가입한 나라



빨간색은 교토의정서를 세계 각국들과 함께 만들었으면서도 결국 비준을 거부 했다.
초록색은 비준한 나라이고, 회색은 비서명국, 노란색은 서명국이지만 비준을 희망하는 나라

파리 COP21의 결과

18년만의 새로운 기후체제

- 전 세계가 참여하는 첫 기후변화 대응체제[195개국, 95%]
- 금세기 후반 배출분과 상쇄분을 같게 하는 이산화탄소 순배출량 0
- 산업화 이전 대비 ‘2도보다 훨씬 낮게’, 1.5도 제한 노력
- 5년마다 이전보다 강화된 감축계획, 55개국 55% 이상의 비준 필요

강제조항 없는 공허한 선언?

- 자국 내 온실가스 감축에는 법적 구속력 부여하지 않음
- 한국 기후변화 대응 노력 세계 최하위권 [58개국 중 54위]

파리 COP21의 결과

	1997 교토의정서	2015 파리기후협약
대상 국가	37개 주요 선진국	195개 당사국
적용 시기	2020년까지의 기후변화 대응방식	2020년 이후 신기후체제
신기후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 감축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구평균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까지 제한 2020년부터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처 사업에 1000억 달러 지원 2023년부터 5년마다 탄소감축상황 보고
한국	감축 의무 부과되지 않음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 목표

파리 COP21의 결과

시기	내용
2016-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국 의회 협정 비준 업종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배정 관련 법 제, 개정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토 의정서 체제 종료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리협정 체제 시작
20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배출 전망치 대비 37% 감축



2001-2015 밀레니엄개발목표(MDGs) (2000. 9)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2016-2030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15. 9)



우리 공동의 미래 (1987)	우리가 원하는 미래 (2012)	SDSN (2014)	SDGs (2015)
1. 빈곤해결을 목표로 하는 성장 2. 성장의 질적 변화 3. 직업/식료품/에너지/물/위생설비에 대한 인간 기본욕구의 충족 4. 지속가능한 인구 수준 및 사회발전계획에 따른 인구정책 5. 자원기반의 보존과 사용효율 증대 6. 기술혁신능력의 배양과 위험관리 방향 재설정 7. 의사결정과정에서 환경과 경제에 대한 종합적 고려	1. 빈곤퇴치 2. 식량안보, 영양, 지속가능한 농업 3. 물과 위생 4. 에너지 5. 지속가능한 관광 6. 지속가능한 교통 7. 지속가능한 도시 및 거주지 8. 보건/건강 및 인구 9. 생산적인 고용확대, 양질의 일자리, 사회적 보호촉진 10. 해양 11. 도서국 개발 12. 최빈국 개발 13. 내륙개도국 개발 14. 아프리카 개발 15. 지역적 노력 16. 재난위험감소 17. 기후변화 18. 산림 19. 생물다양성 20. 사막화, 토지황폐화, 가뭄 21. 산, 산악지역 개발 22. 화학물질 및 폐기물 23.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24. 광업 25. 교육 26. 양성평등 및 여성역량 강화	1. 기아 등 절대빈곤 퇴치 2. 지구적 한계 내에서 국가 발전 실현 3. 모든 아동과 청년의 생애주기 및 생계를 위한 효과적 교육 4. 성평등, 사회적 통합 및 인권의 실현 5. 생애주기 건강과 웰빙의 실현 6. 영농시스템과 농촌생산성의 향상 7. 통합적이고 생산적이며 회복력 있는 도시로의 도시발전 역량배양 8. 인간유발 기후변화의 억제 및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 9. 생태계 서비스 및 생물다양성 확보와 물 및 기타 자연자원 관리 10. 지속가능발전 지향 거버넌스	1. 빈곤퇴치 2. 기아해소, 식량안보, 지속가능농업 3. 보건증진 4. 교육보장과 평생학습 향상 5. 성평등 달성과 여성역량 강화 6. 물과 위생 제공 및 관리 강화 7. 지속가능에너지 8. 경제성장과 일자리 증진 9. 인프라 구축과 산업화 10. 불평등 해소 11. 지속가능도시 12. 지속가능소비생산 13. 기후변화 대응 14. 해양과 해양자원 15. 육상 생태계 16. 평화, 인권, 민주주의 17. 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20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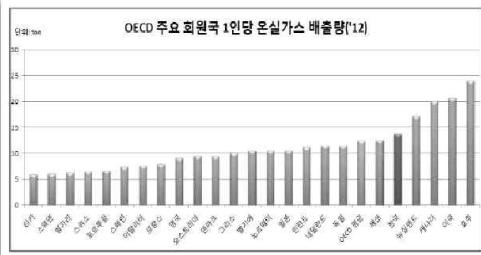
	SDGs	제3차 기본계획 14개 전략
1	빈곤	2-1. 사회 계층간 통합 및 양성평등 촉진
2	기아(식량/농업)	2-2. 지역간 격차 해소, 2-3. 예방적 건강서비스 강화
3	건강/웰빙	2-3. 예방적 건강서비스 강화
4	교육	2-1. 사회 계층간 통합 및 양성평등 촉진
5	양성평등	
6	물	1-3. 깨끗한 물 이용 보장과 효율적 관리
7	에너지	3-3.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에너지체계 구축
8	경제성장/일자리	3-1. 포용적 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 확대
9	산업화/혁신	
10	불평등	2-1. 사회 계층간 통합 및 양성평등 촉진
11	도시/공간	1-1. 고품질 환경서비스 확보, 2-4. 안전관리 기반 확충
12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3-2. 친환경 순환경제 정착
13	기후변화	4-2. 기후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
14	해양생태/자원	1-2. 생태계 서비스의 가치 확대
15	육상생태/자원	
16	평화/인권/민주주의	지속가능발전 이행기반 강화
17	글로벌 파트너십	4-1.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 파트너십, 4-3. 동북아환경협력강화

제2차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평가 결과

64개 지표 중 40개(62.5%) 개선, 24개(37.5%) 악화* ('10~'14 변화율 기준)

	계	환경분야	사회분야	경제분야
개 선(개, %)	40 (62.5)	10 (43.5)	16 (76.2)	14 (70.0)
악화(개, %)	24 (37.5)	13 (56.5)	5 (23.8)	6 (30.0)
총 계(개, %)	64 (100)	23 (100)	21 (100)	20 (100)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t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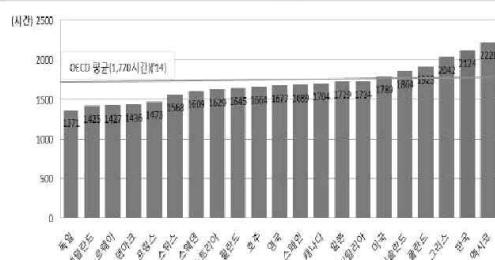
1인당 도시공원 면적(m²/인)



자원부유국 제외하면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OECD 최상위권,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이 선진국 주요 도시에 비해 좁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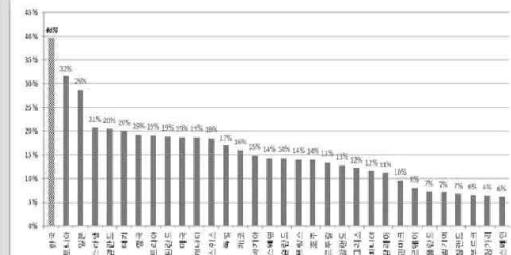
제2차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평가 결과

연간 근로시간('14)



자료: OECD Stat.

성별 임금 격차(%)



자료: OECD 2013

빈곤, 남녀평등, 수명/사망, 교육 항목의 지표를 중심으로 전반적 개선 추세
(사회분야 21개 지표 중 16개(76%)가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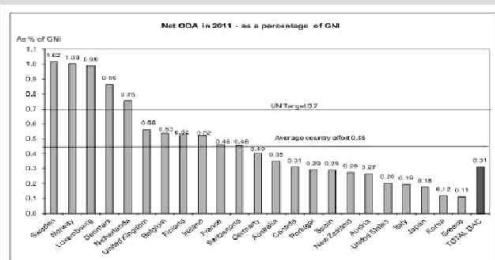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비율,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 비율,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범죄발생률 등은 악화 추세

* 비정규직 임금 비율('10년 53.3%→'14년 48.4%),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 비율('10년 56.7%→'13년 54.3%), 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10년 4.3%→'14년 4.7%), 범죄발생률 ('10년 10만명당 1,901건→'13년 2,106건)

근로시간, 양성평등 관련 지표는 OECD 국가 평균과 비교하여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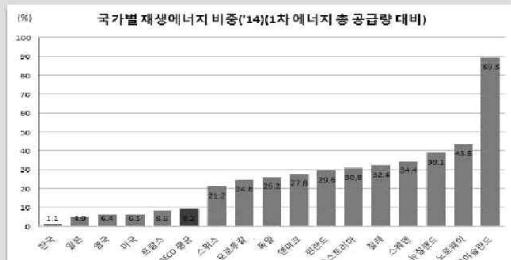
제2차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평가 결과

GNI 대비 ODA 비율(%)



자료: OECD

재생가능에너지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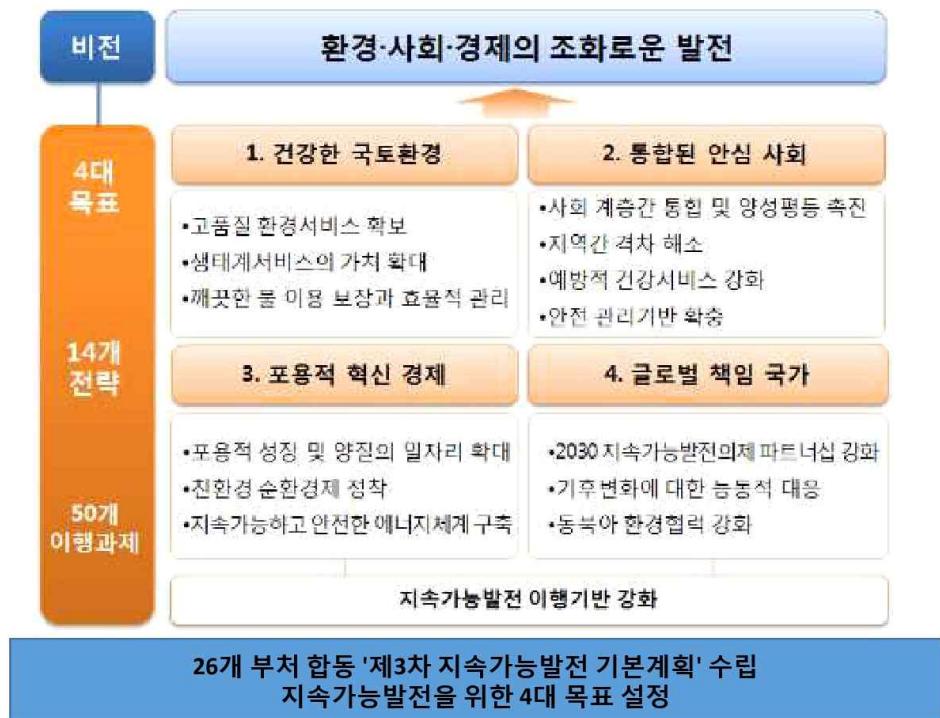
자료: IEA 2015

경제성장, 교통, 정보화 관련 지표를 중심으로 개선 방향을 보이는 지표가 많지만, 질적 측면에서 취약(경제성장률, 투자 등)

※ GDP 대비 순투자율 : '10년 32.1% → '14년 29.0%

개도국 지원, 신재생에너지 사용 관련 지표 역시 개선되고 있으나, OECD 국가 평균과 비교시 저조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비전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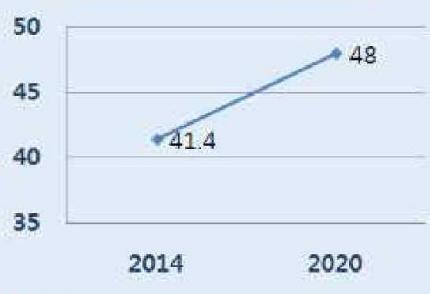
어린이 아토피 질환 환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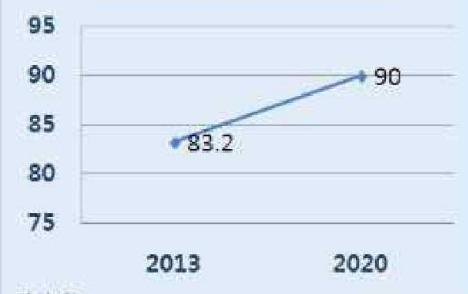
전국 직장어린이집



청년고용률



재활용률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 발전 변화전망

분야	주요지표	2010년	2015년	2030년	OECD 평균 (2010년 회원국 평균)
환경	하천 수질오염도(BOD, ppm)	1.48	0.95	0.95	2.7
	수도권 미세먼지 농도($\mu\text{g}/\text{m}^3$)	50	40	35	35
	1인당 물 소비량(L/일)	332('09)	308	242	256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tCO ₂)	10.31('08)	8	8	10.61('08)
	1인당 도시공원 면적(m^2)	11.3	14.4	20	19.79('06)
경제	1인당 GDP(USD)	20,591('09)	26,508	37,833	33,732('08)
	에너지원단위(TOE/천 \$, 2000년 PPP기준)	0.197('09)	0.178	0.123	0.161('09)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	2.54	4.33	11.0	7.7('08)
	고용율(%)	63.8('08)	64.3	66.7	66.7('08)
	GNI 대비 ODA 비율(%)	0.12	0.25	미정	0.32
사회	빈곤인구비율(%)	15	13	10	11('06)
	소득불평등에 관한 지니계수	0.314('09)	0.300	0.280	0.311('09)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 비율(%)	55.3('08)	60.0	73.0	72.2('08)
	고령인구비율(%)	10.7	15.1	28.3	14.8('08)
	기대수명(년)	80.5('09)	81.4	84.03	81.6('09)

리우회의

- “시민들에게 가장 가까운 수준의 거버넌스로서 지방정부가 지속가능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대중을 교육하고 끌어 모으며 반응하는 데 생생한 역할을 맡고 있다.”
- 의제21 제28장[1992]

리우+5

- “지방의제21은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관심을 우선적으로 다루는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행동계획의 준비와 이행을 바탕으로 지방 수준에서 의제21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참여적이고 다부문적인 과정이다.”

리우+10

- 우선순위: 자연자원관리, 대기질, 수자원관리, 에너지관리, 교통
개선사항: 폐기물 감소, 대중의 인식, 수질, 도시 미화

오늘날 지방 지속가능성 과정에 대한 평가 (ICLEI, 2012)

- “지속가능성을 향한 지방성[locality]과 지방 정책의 개발에 영향을 주기 위한 장기적이고 다양한 부문의 의도적인 활동”

지방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

- 지방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는 여러 가지 형태를 띠고 있고, 공동체 스스로 규정한 목표를 반영한다.

각자의 가치와 우선순위에 따라 상이한 방식으로 지속가능성을 규정하는 것이다.

지방의제21은 하나의 운동으로 고취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지만, 이제 지속가능성 개념이 의제21을 전혀 들어보지 않은 자치단체, 기업, 단체들에 의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ICLEI local governments for sustainability

- 이클레이는 지방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 (ICLEI:International Council for Local Environmental Initiatives) 하는 명칭으로 창립.
- 2003년 세계총회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 이클레이」로 공식명칭을 변경하였고, 이클레이로 약칭
- 1990년 뉴욕 UN본부에서 개최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제1차 지방 정부세계 회의'에 참석한 43개국 200개 지방정부에 의해 창립.
- 1991년 캐나다 토론토 세계사무국과 독일 프라이부르크 유럽사무국에서 활동을 시작
- 최초의 글로벌 프로그램은 시민참여와 파트너십에 기초한 지역단위 지속가능발전 운영 프로그램인 「지방의제21 (Local Agenda21)」과 지방정부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기후보호도시 캠페인 (CCP : Cities for Climate Protection)」
- 이클레이의 프로그램과 캠페인은 단순히 환경적 차원을 너머 광범위한 지방정부의 지속가능성 관련 사안을 고려하고 지원

이클레이의 10 의제

지속가능한 도시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도시

생산적이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도시

재난과 위기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회복력 있는 도시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도시

똑똑한 도시

생태교통 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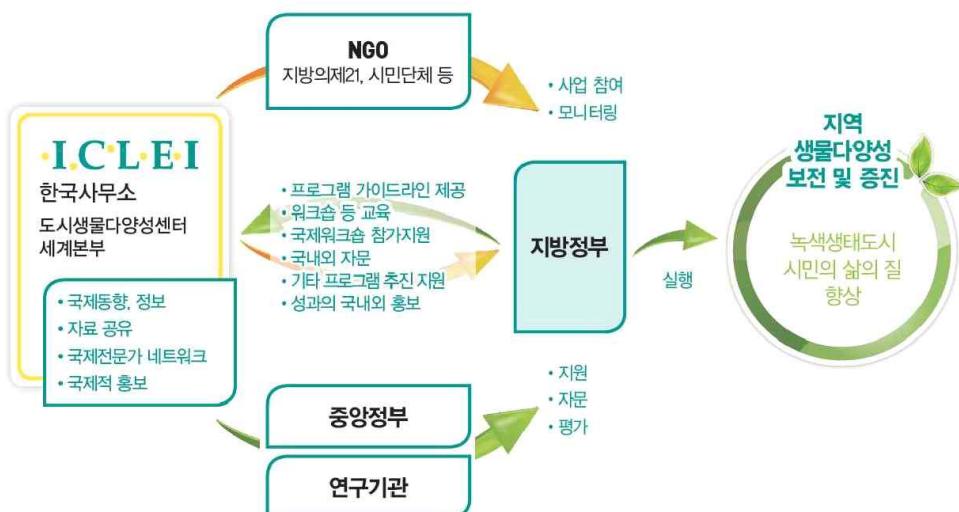
행복하고, 건강하며, 포용적인 지역사회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및 녹색 구매

도시-지역 간 지속가능한 협력

ICLEI 의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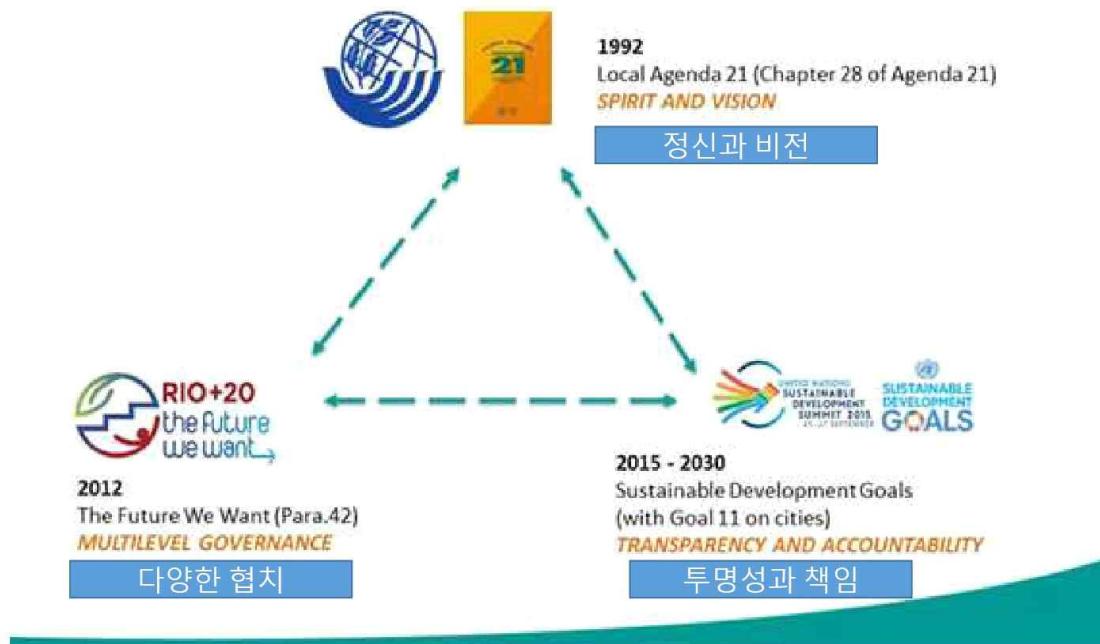
이클에이 프로그램 : 기후, 생물다양성, 생태교통, 친환경 교통주간



**Cornerstones of
Transforming the Urban World towards Sustainability**



지속가능성을 향한 세계지방정부의 기초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의 새로운 추진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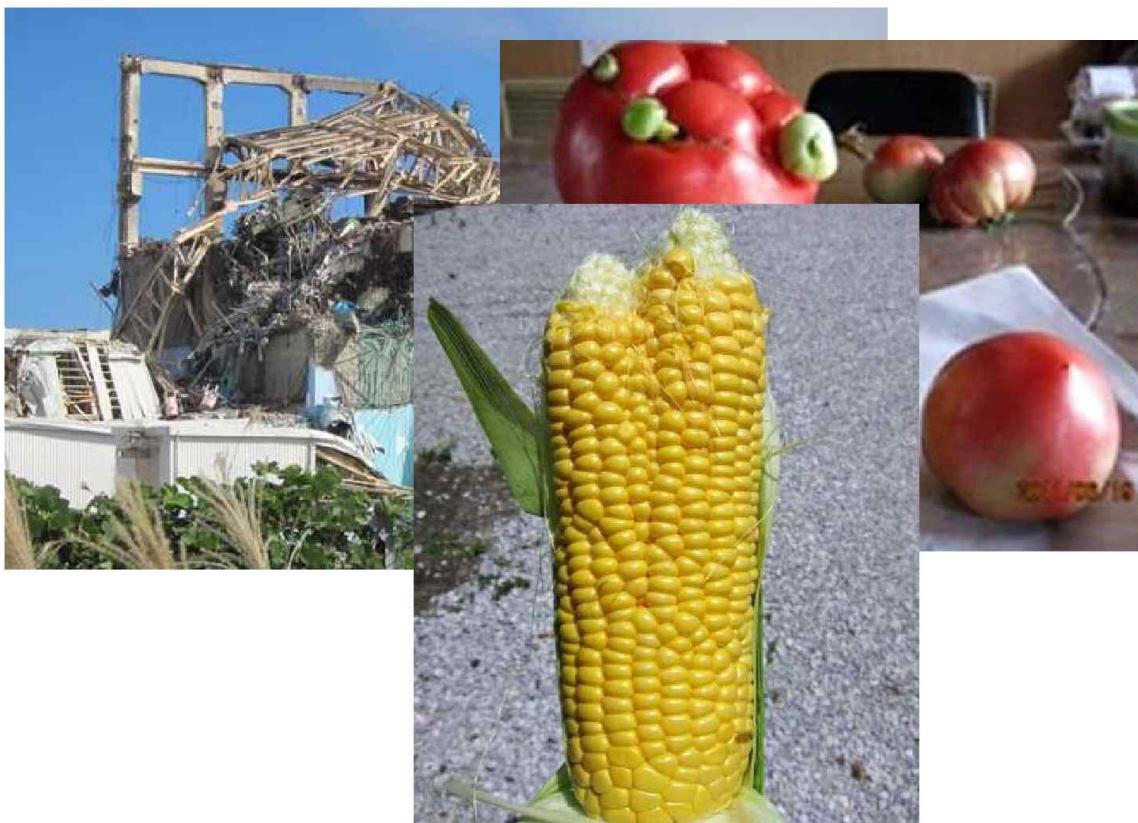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사업 분야별 내용(예)

연도	지역자립 경제	녹색지역 경제	이웃관계	공동체 형평성	생태적 건강	기후변화 대응	공동체 문화	민주주의 역량	합계
2011	1	1	1	1	3	3	6	1	17
2012	1	1	2	1	3	2	6	2	18
2013	4		1	1	5	4	8	5	28
2014	4	1		1	2	2	11	2	23
합계	10 (11.6%)	3 (3.5%)	4 (4.7%)	4 (4.7%)	13 (15.1%)	11 (12.8%)	31 (36.0%)	10 (11.6%)	86



<뜨는 도시 지는 국가>

- 도시는 이념과 정당 강령보다는 문제해결을 선호한다.
- 주권과 관할권의 배타성을 가지고 싶어 하지 않아 경계를 초월한 협력의 동인
- 도시는 정치적으로 지역적이지만 공적 성향이 있다.
- 공공의 연합체라는 점 덕분에 도시는 세계의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
- “사람들은 도로에 파인 곳과 교통체증에 대해 시장과 이야기하는 것에 더욱 관심을 가지더군요.”
- 시장이 세상을 통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위치에 있으며 전 세계 민주주의의 생존에 최고의 희망이 될 가능성이 높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763582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7644404>
<http://entertain.naver.com/read?oid=144&aid=0000337655>

지속가능발전 유엔회의의 흐름

유엔환경개발회의 / 글로벌포럼 (1992년 리우데자네이루)

- ◆ Agenda 21 작성
-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 (2002년 요하네스버그)

- ◆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
- ◆ 지속가능발전 지표 개발 및 평가

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 (2012년 리우데자네이루)

- ◆ 지방정부가 주요 실천 주체
- ◆ 지속가능발전의 제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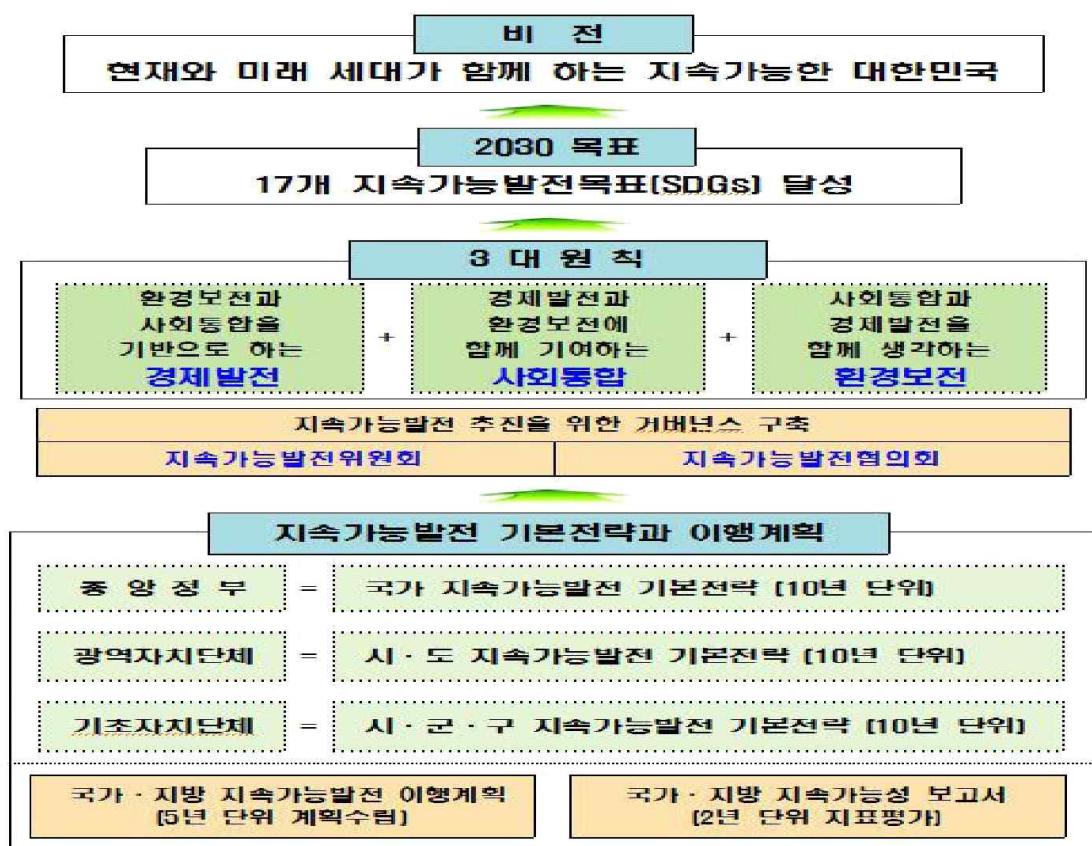


지자체의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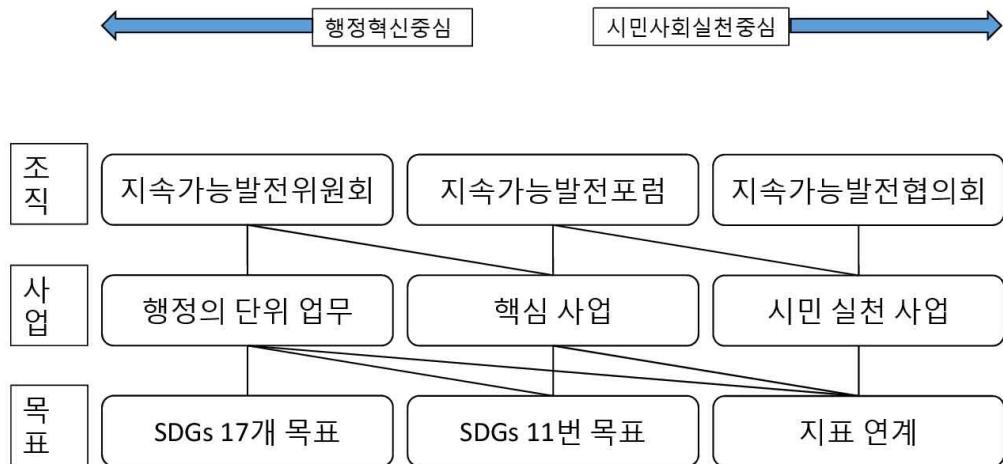
	조례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담당 행정조직	전략 및 이행계획
서울 강동구		△[협의회]		
충청남도	○(기본조례)		○	
인천 남구			△(명칭변경)	
서울 도봉구	○	○	○	
서울시	○	○	○	○(기본계획)
인천 부평구 광주, 담양	○	○	○	○
충남 아산시			○	

2015-2018 이클레이 한국 전략계획

1. 유엔 SDGs 내 도시 목표의 수립과 지속가능성 평가
2. 지역 기후행동의 확대, 실천
3.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위한 계획과 실천
4.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정책과 사업 성과의 10% 향상



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활동 방향



'나 보다 느리게 운전하는 사람은 멍청이고,
나 보다 빠르게 운전하는 사람은 미친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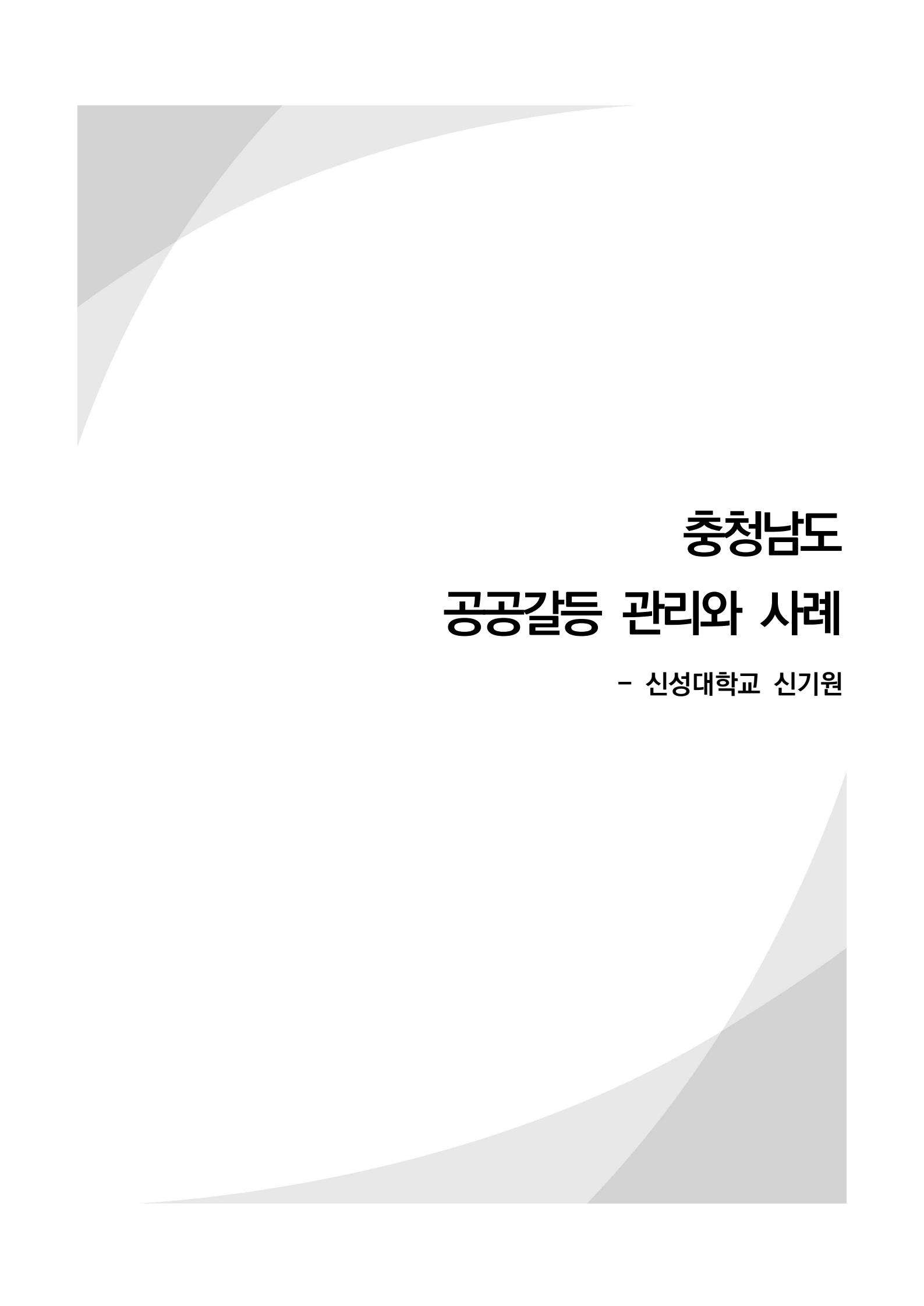
94%의 사람들이 자신의 유머감각을 평균이상으로 생각하고
80%의 운전자들이 평균이상의 운전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전세계 75%의 사업가들은 자신을 평균이상의 도덕성을 가진 사람으로 생각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성격과 능력에 대해 비현실적으로 낙관적이라는 사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_w.aspx?CNTN_CD=A0002165275

대한민국 OECD 1위 50 가지

- | | |
|--|---|
| 1. 자살률 - 1위
2. 산업재해 사망률 - 1위
3. 가계부채 - 1위
4. 남녀 임금격차 - 1위
5. 노인 빈곤률 - 1위
6. 청소년 출연율 - 1위
7. 성인 출연률 - 1위
8. 가장 낮은 최저임금 - 1위
9. 저임금 노동자 비율 - 1위
10. 자동차 접촉 사고율 - 1위
11. 인도에서 교통사고율 - 1위
12. 보행자 교통사망률 - 1위
13.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 - 1위
14. 노인 교통사고 비율 - 1위
15. 교통사고 사망률 높은 국가 - 1위
16. 학업시간 가장 높은 순위 - 1위
17. 환경평가 뒤에서 - 1위
18. 어린이 행복지수 낮은 순위 - 1위
19. 청소년 행복지수 낮은 순위 - 1위
20. 이촌 증가율 - 1위
21. 결핵 환자 발생률 - 1위
22. 결핵 환자 사망률 - 1위
23. 담뇨 사망률 - 1위
24. 남성 간질환 사망률 - 1위
25. 대장암 사망률 증가율 - 1위 | 26. 심근경색 사망률 - 1위
27.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 - 1위
28. 노령화 지수 - 1위
29. 국가채무 증가율 - 1위
30. 자살 증가율 - 1위
31. 공공 사회복지 지출 비율 - 1위
32. 실업률 증가폭 - 1위
33. 대학교육 가계부담 - 1위
34. 낙태율 - 1위
35. 과학 흥미도 뒤에서 - 1위
36. 중년여성 사망률 - 1위
37. 사교육비 지출 - 1위
38. 15세 이상 술 소비량 - 1위
39. 득주 소비량 - 1위
40. 출산률 제일 낮은 국가 - 1위
41. 근무시간 많은 국가 - 1위
42. 세부담 증가속도 빠른 국가 - 1위
43. 국가부채 증가속도 - 1위
44. 식품 물가 증가율 - 1위
45. 임주 소비율 - 1위
46. 저출산 - 1위
47. 공교육비 민간 부담 - 1위
48. 사회안전망 가장 안 좋은 순위 - 1위
49. 정치적 비전이 안 좋은 순위 - 1위
50. 고등교육 국가가 지원해 주는 비율 뒤에서 - 1위 |
|--|---|



충청남도

공공갈등 관리와 사례

- 신성대학교 신기원

충청남도 공공갈등관리와 해소방안

2016. 12. 7.
신성대학교 교수 / 충청남도 갈등관리심의위원장
신기원



목차

- I. 공공갈등 개요
- II. 갈등관리 현황
- III. 충청남도 갈등관리 사례
- IV. 시사점

공공갈등 개요

1. 공공갈등이란
2. 갈등발생 주요원인
3. 공공갈등 표출 및 변화
4. 관리의 필요성

공공갈등의 개념 및 주요원인

충남연구원
Cnusy.Nara Institute

공공갈등이란

- ✓ 정부의 공공정책 입안 및 집행, 각종 사업 시행과 법규 제정 등
 공공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문제를 쟁점으로 전개되는 갈등
- ✓ 공공갈등 중에서도 구체적인 이익이나 권리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갈등을
 특별히 공공분쟁(public dispute)이라 함

갈등발생 주요원인

- ✓ 산업화, 민주화 과정에서 님비(NIMBY), 핌피(PMFY)현상 심화
 – 지자체별 자율성과 독자성 강화된 반면, 책임과 능력은 미흡
- ✓ 주민과 정부간, 지자체간, 지자체와 정부간 갈등 조정기구 미흡
 – 비 선호시설 입지선정 등 정책과정에서의 주민참여 배제
- ✓ 중앙집권적 권위주의 하향식(top-down) 정책결정과정 답습
 – 국가(자치단체)와 시민사회간의 인식론적 의사소통 미흡

개발시대와 자치시대의 비교

개발시대 논리	자치시대 논리
힘의 논리 지배 · 관의 일방적 지시	과정의 민주성 확보 · 내용의 공정성 담보
효율성 강조	민주성 강조
행정기관에 의한 동원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관심 중요
국가에 대한 의무 강조	주민 개개인의 권리 강조



5

공공갈등 표출 및 변화

- ✓ 1980년대 후반에 민주화 추세에 따라 갈등 확산
 - 경제개발 속에서 이념이나 노동문제 등 계층간의 갈등이 주요 갈등
- ✓ 1990년대 지방자치제도의 전면 시행으로 지자체간 갈등 증가
 - 쓰레기소각장 등 비선호시설 입지, 기업유치, 철도역사 등 선호시설 건립을 둘러싼 공공정책 갈등
- ✓ 2000년대부터는 갈등의 대상이 확대 및 다양화
 - 경제가 발전됨에 따라 이념갈등 보다 환경, 복지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안의 갈등이 확산 · 증가

관리의 필요성

- ✓ 공공갈등의 지속적 분출
- ✓ 갈등발생 증가에 따른 체계적 대응 요구
- ✓ 갈등관리 방식의 변화 필요
- ✓ 제도적 시스템 필요
- ✓ 갈등 해결을 위한 전문인력 지원 필요
- ✓ 갈등 사안의 광역화로 지역간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

6

갈등관리 현황

1. 국내 갈등관리 추세
2. 충청남도 갈등관리 현황

국내 갈등관리 추세 및 충청남도 갈등관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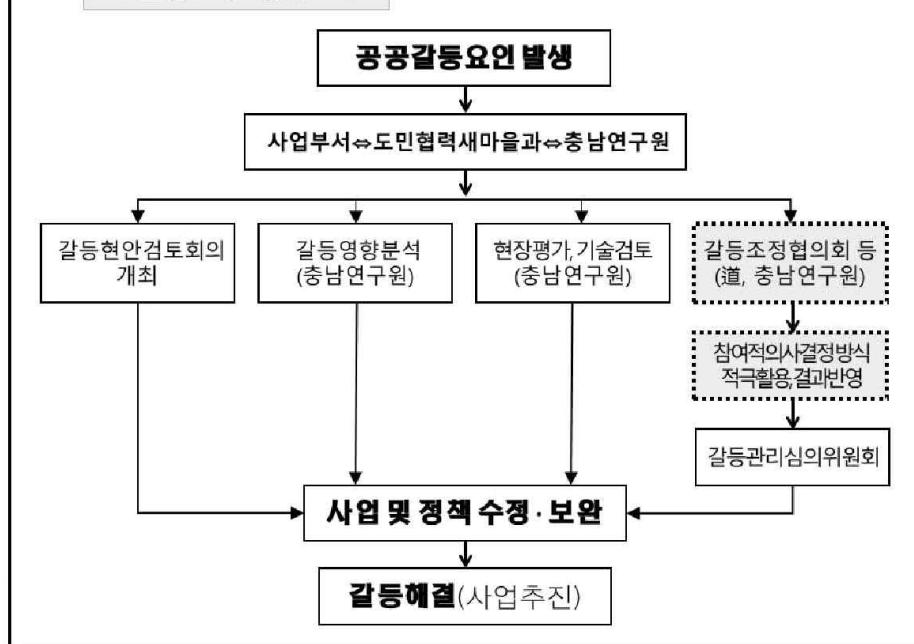
국내 갈등관리 추세

- 2007년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을 제정·시행
- 정책의 입안부터 대화와 타협, 참여와 협력을 통한 원만한 해결 도모
- 2007.11.23. 충청북도 갈등관리 조례제정
- 충청북도 조례제정을 시작으로 각 광역 지자체 중심으로 갈등관리 조례를 제정
- 서울시는 2012년부터 갈등관리 전담조직인 “갈등조정담당관” 신설
- 現 2개 팀 9명으로 구성, 2014년 예산액 6개 사업에 261백만원
- 2015년부터 광주시 사회통합추진단, 인천시 민원소통담당관내 갈등관리팀을 신설하여 체계적인 갈등관리 이행

충청남도 갈등관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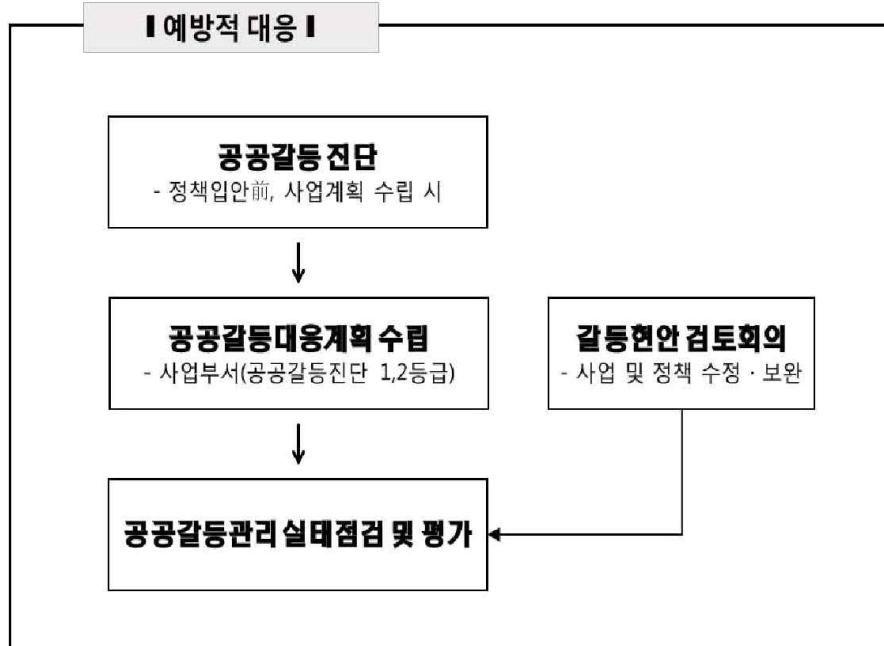
- 2006년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 충남 정책포럼 창립
- 4개 권역(북부, 중부, 남부, 서해안권) 포럼 운영
- 2010. 11. 갈등관리조례를 제정·공포
- 공공갈등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갈등관리담당관 토론회 등을 통한 도·시·군 간 네트워크 형성
- 2014. 12월 갈등관리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전면 개정
- 2015년 1월 갈등관리팀을 신설
- 2016년 5월 갈등관리전문기관 지정 → 충남연구원(공공갈등연구팀)

■ 갈등조정 체계도 ■



9

■ 예방적 대응 ■



10

충청남도 갈등관리 사례

- 보령 공군사격장 환경피해 갈등 -

충청남도 사례분석

충남연구원
ChungNam Institute

I 보령 공군사격장 환경피해 갈등

갈등개요

- ✓ 위치 : 보령시 신흑동 산 253-1
- ✓ 소속 : 공군방공포사령부(평택소재)
- ✓ 주요인력 : 96명
- ✓ 주사격종목 : 대공포, 연1회 미사일사격
- ✓ 운영기간 : 150일/년
 - 해수욕장 개장(7~8월), 동절기(12~2), 휴일75일 제외

주요진행경과

- '08. 6 : 지역주민 공군사격장 피해관련 문제 공식 제기
- '09. 4~9 : 토양·지하수 오염 조사
- '10. 6 : 공군사격장 인근지역 토양·지하수 오염 보도
- '10. 6~9 : 주민건강영향조사(보령시, 호서대)
- '11. 6 : 환경부에 주민건강영향조사 추가 요구
- '11. 6~12 : 갓배마을 환경영향조사(환경부)
 - 패류(금) 카드뮴(Cd) 기준초과, 화약성분(RDX) 검출
- '12. 8 : 국회방문 및 사격장 이전 등 건의
- '12. 9~12 : 맹평가 사신지 조사원료, 해안오염영향조사(공군)
- '12. 11 : 보령 공군사격장 민원지역 주민설명회(환경부)
- '13. 3 : 보령 공군사격장 관련 대책회의(충청남도)
- '13. 6 : 사격장 주변 수산물 인정성 검사(해양수산부)
- '13. 12 : 보령 공군사격장 피해관련 주민간담회(충청남도)
- '14. 1~6 : 보령 공군사격장 주변지역 선행연구 분석(충청남도, 충남연구원)
- '14. 7 : 관계기관 워크숍 개최(충청남도, 충남연구원)
- '14. 11 : 관계기관 워크숍 개최(충청남도, 충남연구원)



배경/성격

01 배경 및 원인

보령 공군사격장 운용과 관련하여, 사격시 발생되는 소음 및 탄피의 해양퇴적 등으로 인한 환경 오염피해, 건강악화로 주변지역 주민들 민원제기

02 성격(특성)

- 보령시 갓배마을 인근 공군사격장 입지로 인한 환경피해 갈등임
- 비선호시설(군사시설) 입지로 인한 지역주민 불만

| 보령 공군사격장 환경피해 갈등

쟁점

✓ 사격장 운영으로 인한 환경피해

- 보령 공군사격장은 미8군 사격장을 시작으로 1981. 7 한국육군으로 이관, 1991. 7부터 공군 방공유도탄사령부에서 사격장으로 운영중임
- 사격훈련은 모형비행기를 띠워 해상에서 타격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이로 인한 탄두·탄피·기타 유독성 물질로 인해 해상오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주장임

✓ 피해보상과 재발방지, 부대이전

- 지역주민들은 약 50년간 운영된 사격장으로 인해 환경피해가 발생했으며, 그로 인한 지역민들의 건강 역시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임
- 또한 피해의 재발방지를 위한 공군사격장의 이전을 주장함



| 보령 공군사격장 환경피해 갈등

이해관계자

✓ 국방부

- 보령 공군사격장 이전 계획 없음
- 2009년부터 3년마다 공군사격장 주변 해양환경 영향조사
- 매년 軍 자체에서 탄두수거(사업비 2억) / ※ 폭발위험성 등으로 민간위탁은 전혀 고려치 않고 있음
- 원인 제공자인 국방부에서 근본적 문제해결에 소극적

✓ 환경부

- 사격장 주변지역 암 발생 역학조사 관련, 내부적으로 암 발생 현황검토 및 관계전문가 자문 진행 중

✓ 충청남도·보령시

- 공군사격장은 국방부에서 운영중인 시설로 자치단체의 의사결정과는 관계없이 운영중임
-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국방부와 중앙부처에 피해 해결을 촉구하는 건의를 지속 추진 중

✓ 지역주민

- 보령 공군사격장은 연 150일 이상 사격훈련을 실시하고 있음
- 이로 인한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이상 등을 이유로 주민들이 공군부대 이전을 요구 중



| 보령 공군사격장 환경피해 갈등

협의체 구성

- ✓ 목적
보령공군사격장 주변지역 및 지역민의 환경피해관련 이해당사자와 환경단체·환경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한 조사의 공정성 확보, 문제해결 도모
- ✓ 명칭 : 보령 공군사격장 환경피해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회
- ✓ 위원 : 16명(공동대표4인, 위원 12인)
 - 충남도 4인, 보령시 4인, 지역주민 4인, 전문가·단체 4인
 - * 설치근거 :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14호
- ✓ 기능 : 환경피해 해결을 위한 컨트롤타워 등
- ✓ 기간 : 2년(2015. 3 ~ 2017. 3)
- ✓ 운영 : 보령 공군사격장 관련 갈등해결을 위한 활동
 - * 민관협의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규정에 따라 운영

주민주장 보령 공군사격장 피해지역 현황도



현황도



시사점

- 참여적 의사결정을 중심으로 -

참여적 의사결정의 개념

- ✓ 공공정책을 수립·추진 시 의사결정과정에 이해당사자나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참여를 통해 협의하여 합의를 추구하는 의사결정 방식

참여적 의사결정의 설계 시 고려해야 할 공통요소

- ✓ 참여의 공식화 : 참여주체나 당사자의 대표성에 대한 확인과 대내외적 인정
- ✓ 참여자 간 정보 공유의 문제 : 질 높은 충분한 정보로 합리적 토론 가능
- ✓ 참여자 합의 결정의 문제 : 의사결정규칙을 마련하고 참여자간 합의 지향
- ✓ 참여자 간 숙의기회의 문제 : 숙의와 중립적 전문가 활용, 객관적 시각 확보

참여적 의사결정 활용 취지

- ✓ 숙의적 민주주의와 합의형성과정을 강조하여 민주주의 증진에 기여
- ✓ 의사결정과정에서 다양한 대안의 창출을 통한 창의적 해법의 제시
- ✓ 갈등예방 및 해결 차원에서 공공정책결정과정에 적극적 활용 권장

17

참여적 의사결정의 필요성

- ✓ 권위적 의사결정의 한계
 - 증가하는 시민참여 요구와 의사
- ✓ 공공쟁점의 다양한 성격
 - 가치충돌의 내재
 - 양립 불가능한 이해관계의 충돌
 - 인식의 불일치 요소 (위험인식과 판단 등)
 - 정보부족과 불균형에 따른 충돌가능성의 내포
 - 편향적 인지와 왜곡된 의사소통의 발생
- ✓ 의사결정과정의 합리성 추구



- ✓ 정부정책 결정 → 주민의 빠른 수용이 어려움 (지방자치시대)
- ✓ 권위적 의사결정의 한계 – 인식은 공감, 방법은 다름 (例, 밀양송전탑문제)

18

참여적 의사결정의 절차적 합리성

- ✓ 참여적 의사결정에서 절차적 합리성은 필수적 조건임
- ✓ 공공사안 논의에서 숙의적 의사결정 조건 마련
 - 결정과정과 결정규칙의 공개성 (Publicity)
 - 관료와 시민 간의 평등성 (Equality)
 - 가능한 당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포함성 (Inclusiveness)
- ✓ 민주적 토론
 - 충분한 자문 (Consultation over time)
 - 평등한 자원과 정보 접근 (Equal resource and access to information)
 - 공유된 의사결정권한 (Shared decision making authority)
 - 권위적 의사결정 (Authoritative decision making)



- ✓ 시화호의 성공요인 : 모든 자료 공개, 시민 중심의 협의 주도 (회의자료 홈페이지)
- ✓ KBS 심야토론 : 찬반토론으로 끝남 (합의 못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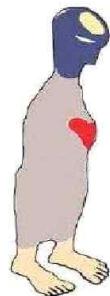
19

참여적 의사결정의 효과

- ✓ 민주적 과정의 중시
- ✓ 사회적 학습의 기회 확대
- ✓ 공공정책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
- ✓ 공공 이슈를 둘러싼 의사 결정의 책임성 제고와 정책의 민주성 강화
- ✓ 시민과 정부 간 신뢰 형성 및 제고
- ✓ 생산적 대안 창출의 기회 확대



20



가는 면 여행은 머리에서 가슴까지라 합니다.
사상(cold head)이 새 깊(warm heart)으로 성숙하기까지의 여정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여정이 남아있습니다. 가슴에서 발까지의 여행입니다.
발을 살피며, 현장이며, 출입마다. 이 책 속에.

21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정) 2010-11-10 조례 제 3544호

(일부개정) 2014-07-10 조례 제 3915호

(전부개정) 2014-12-30 조례 제 3943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공공갈등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성숙한 지방자치 건설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합리적 예방과 해결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정책”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 자치법규의 제(개)정을 말한다.
2. “공공갈등”이란 도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인간의 충돌을 말한다.
3. “공공갈등관리”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갈등영향분석”이란 갈등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정책을 수립하기 전이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원인이나 요인을 조사·분석 및 그 영향의 정도를 사전에 예측하고, 공공 갈등을 예방·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① 예방과 해결의 적용대상은 도내에서 발생하여 지역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공공갈등으로 한다.

1. 도정 갈등: 도의 정책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갈등
 2. 그 밖의 갈등: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갈등
- ② 적용대상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 도지사는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

1. 도정 전반에 걸쳐 그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갈등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적 공공갈등관리계획을 수립·추진한다.
2.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한다.
3. 소속 공무원에게 그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제2장 예방과 해결의 원칙

제5조(자율해결과 신뢰확보) ① 공공갈등의 당사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해결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율적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중립적 위치에서 당사자 간에 합리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감으로써 이해관계인의 신뢰회복에 노력해야 한다.

제6조(이익의 비교형량) 도지사는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상호간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갈등영향분석) ① 도지사는 주요정책 등을 수립·시행 또는 변경할 때 도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도민과의 이해 상충으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예상·판단될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때에는 그 분석서를 작성하여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에는 갈등의 발생 및 해결 가능성, 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한 절차 등을 포함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영에서 정한 갈등영향분석 기법을 충실히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제2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제8조(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① 도지사는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이해당사자, 전문가, 각계 대표 등이 공공정책의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활용결과를 공공정책 등의 결정 및 추진과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3장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제9조(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공공갈등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충청남도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추진
2. 도 및 시·군과 주민간의 갈등사항, 관리대상 등의 지정·조정
3. 관련 자치법규의 정비
4. 제4조 제2항에 따른 해결방식의 발굴·활용
5. 제7조에 따른 갈등영향분석 실시 여부
6. 제15조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운영 참여
7. 그 밖에 도지사가 예방과 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심의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이 아닌 심의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이 경우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

1.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시민단체 대표
3. 언론인

4. 충청남도의회의장 및 시·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5. 도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④ 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공무원인 경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심의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경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심의위원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⑥ 도지사는 심의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질병 또는 품위 손상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촉해제 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총괄 부서장의 장이 되고 서기는 관계 업무 팀장이 된다.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또는 공공갈등당사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심의위원은 위원회의 심의·자문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② 심의위원은 제1항에 해당됨을 알게 된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3조(심의결과의 반영)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외에는 위원회의 제11조 각 호에 따른 심의 결과를 주요시책의 수립·추진과정에 성실히 반영해야 한다.

제4장 갈등조정협의회

제14조(설치) 도지사는 공공갈등을 원만하게 조정·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마다 사안별로 갈등관리 총괄부서로 하여금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5조(구성 · 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협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위원은 도지사가 해당 사안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당사자(공동의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다수의 당사자 중 선임한 대표당사자를 포함한다)

2. 전문가

3. 심의위원

③ 협의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한다. 단 필요시 협의회 구성원 간 합의에 의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의장 등) ① 협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협의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② 의장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당사자간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그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③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합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① 협의회는 갈등사안에 대하여 조정된 합의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합의 결과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합의 결과를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장 갈등관리 전문기구

제18조(갈등관리 전문기구 등의 운영·지원) ① 도지사는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갈등관리 전문기구(이하 “전문기구”라 한다) 등을 지정·활용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갈등관리 전문기구 등의 운영을 위하여 지역 내 연구원 또는 갈등관리전문기관 등에 그 운영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갈등관리 전문기구의 운영지정서를 교부한다.

- ③ 갈등관리 전문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갈등현장 조정 ·해결 지원
 2. 갈등영향분석의 수행
 3. 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 · 배포 · 활용
 4. 갈등의 예방 · 해결을 위한 교육훈련
 5.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에 관한 조사 · 연구
 6. 갈등의 예방 · 해결을 위한 정책·조례·제도·문화 등의 조사 · 연구
 7. 상생·협력 및 사회통합을 위한 갈등관리 네트워크 및 거버넌스 구축
 8. 그 밖에 도지사가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장 보칙

제19조(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도지사는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갈등관리매뉴얼을 활용할 수 있다.

제20조(점검·평가 등) 도지사는 년 1회 이상 각 부서의 공공갈등관리 실태를 점검·평가할 수 있다.

제21조(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갈등관리에 필요한 조사·연구, 갈등영향분석, 자발적·체계적 활동, 갈등 관리 전문기구 등의 운영 촉진을 위하여 유관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또는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그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심의위원, 협의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충청남도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22조(비밀유지) 심의위원 및 협의위원, 관계공무원 등 모든 갈등관리 관계자는 그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조례 제39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도지사가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한 위원회 및 갈등관리 전문기구와 그 처리하였거나 처리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며, 심의위원의 임기는 계속된다.

Memo

Memo

Memo
